

특별조사 결과 조치사항

기관명	지적 및 조치 요구
국립 중앙박물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중앙박물관 방호주사보 A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국가공무원법』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·반복적으로 본인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있어 '징계'(경징계 이상)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산금 징수 조치 ○ 국립중앙박물관 방호주사보 B, 방호서기 C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호주사보 A의 출퇴근 기록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어 '엄중 주의'(개인주의) 조치 ○ 국립중앙박물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호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소홀로 '기관주의' 조치하고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